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감점 부과방법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0] 감점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table><tr><th>감점사항</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tr><td>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td><td><u>1</u></td><td>당해심의</td></tr><tr><td>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td><td><u>2</u></td><td>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td></tr><tr><td>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td><td><u>2</u></td><td>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td></tr><tr><td>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u>10</u></td><td>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td></tr></table>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u>1</u>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u>2</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u>2</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u>10</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별표 10] 감점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table><tr><th>감점사항</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tr><td>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td><td><u>3</u></td><td>당해심의</td></tr><tr><td>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td><td><u>5</u></td><td>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td></tr><tr><td>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td><td><u>5</u></td><td>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td></tr><tr><td>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u>15</u></td><td>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td></tr><tr><td>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면제처분도 포함)</td><td><u>10</u></td><td>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td></tr></table>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u>3</u>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u>5</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u>5</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u>15</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면제처분도 포함)	<u>10</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u>1</u>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u>2</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u>2</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u>10</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u>3</u>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u>5</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u>5</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u>15</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면제처분도 포함)	<u>10</u>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감점 부과방법 가.~다. (생략) <신설>	2. 감점 부과방법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